

계약규정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
제7조의2 (예정가격의 비치)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,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동산 및 부동산(이에 준용되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공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7조의2 (예정가격의 비치)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,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동산 및 부동산(이에 준용되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공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. 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 (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) ① - ② (생략) ③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사전에 입찰참가자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.	제22조 (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) ① -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사전에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.
(신설)	제26조의 2(구매규격 사전공개) ① 계약요청부서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의뢰 전 구매규격을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사전공개를 의뢰하여야 한다.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요청부서에서 작성한 구매규격을 바탕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제공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1.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,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 2.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3.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 ③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회사 계약관리시스템 또는 한전전자조달시스템(SRM)등을 통해 5일간 공개하며,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간 공개할 수 있다. ④ 구매규격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 계약요청부서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한 후 구매규격을 확정하여 계약의뢰를 하여야 한다. ⑤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「구매규격 사전공개 운영업무지침」에 따른다.
제106조 (계약 관련 법령 등의 준수·준용) ① - ② (생략)	제106조 (계약 관련 법령 등의 준수) ① - ② (현행과 같음)
부 칙	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	

계약관리업무절차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
제2조2 (용어의 정의) 1. - 5. (생략) 6. 전자조달시스템 : 정보통신설비에 회사의 계약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우리회사가 지정하여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. 7. 계약관리프로그램 : 회사의 각종 수·발주 계약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및 사업계약관리시스템 등을 말한다.	제2조2 (용어의 정의) 1. - 5. (현행과 같음) (삭제) 6. 계약관리시스템 : 회사의 각종 수·발주 계약업무 등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.
제3조의2 (계약관리프로그램) 우리회사의 <u>계약관리프로그램</u> 데이터의 정확성 보장, 최신 데이터의 유지 관리 및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입력 및 수정에 대한 사항은 다음 절차에 의하며 관련 각종 서식은 <u>계약관리프로그램</u>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1. 개발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<u>계약관리 프로그램</u>을 이용하여 발주계획 품의 및 계약의뢰를 하여야 하며, 계약부서도 계약의 추진 및 체결 품의 시 <u>계약관리 프로그램</u>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현장발주공사의 계약, 긴급을 요하는 계약, 예비품 계약 등 <u>계약관리 프로그램</u>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부서는 계약체결 후 계약사항을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. 2. 계약부서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사항 및 계약관련 자료를 <u>계약관리 프로그램</u>에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입력하여 계약현황을 기록 관리한다. 3. - 4. (생략)	제3조의2 (계약관리시스템) 우리회사의 <u>계약관리시스템</u> 데이터의 정확성 보장, 최신 데이터의 유지 관리 및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입력 및 수정에 대한 사항은 다음 절차에 의하며 관련 각종 서식은 <u>계약관리시스템</u>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1. 개발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<u>계약관리시스템</u>을 이용하여 발주계획 품의 및 계약의뢰를 하여야 하며, 계약부서도 계약의 추진 및 체결 품의 시 <u>계약관리시스템</u>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현장발주공사의 계약, 긴급을 요하는 계약, 예비품 계약 등 <u>계약관리시스템</u>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부서는 계약체결 후 계약사항을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. 2. 계약부서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사항 및 계약관련 자료를 <u>계약관리시스템</u>에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입력하여 계약현황을 기록 관리한다. 3. - 4. (현행과 같음)
제20조 (예정가격의 결정절차) ① 계약부서는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에 근거한 사정금액을 기록한 예정가격표(별지5호 서식) 및 예정가격 봉투를 첨부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결정된 예정가격표는 밀봉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결정권자가 <u>계약관리프로그램</u>에 직접 입력한다. ② 전산시스템에 예정가격을 입력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의 보안절차에 따라 예정가격의 보안을 확보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	제20조 (예정가격의 결정절차) ① 계약부서는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에 근거한 사정금액을 기록한 예정가격표(별지5호 서식) 및 예정가격 봉투를 첨부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결정된 예정가격표는 밀봉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결정권자가 전자조달시스템(계약규정 제21조 제5항의 ‘전자조달시스템’을 지칭하며 이하 같다)에 직접 입력한다. ② 전자조달시스템에 예정가격을 입력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보안절차에 따라 예정가격의 보안을 확보하여야 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

제20조 2 (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) ① - ⑥ (생략) ⑦ 전자입찰의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복수예비가격의 산출과 예정가격의 결정은 <u>전산시스템</u>에서 보안이 유지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하며, 그 결과를 낙찰자 또는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후 공개하여야 한다.	제20조 2 (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) ① - ⑥ (현행과 같음) ⑦ 전자입찰의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복수예비가격의 산출과 예정가격의 결정은 <u>전자조달시스템</u>에서 보안이 유지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하며, 그 결과를 낙찰자 또는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후 공개하여야 한다.
제46조 (발주계획 품의서의 작성) ① 구매요구부서는 <u>계약관리프로그램</u>을 통하여 발주계획 품의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의 협조를 얻어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통제 및 감사담당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. ② - ⑧ (생략)	제46조 (발주계획 품의서의 작성) ① 구매요구부서는 <u>계약관리시스템</u>을 통하여 발주계획 품의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의 협조를 얻어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통제 및 감사담당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. ② - ⑧ (현행과 같음)
제63조 (계약대장의 비치) ① 계약부서장은 계약대장 기재사항을 <u>계약관리프로그램</u>에 입력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② 제 1항에 의해 계약대장을 관리할 경우 <u>계약관리프로그램</u>의 계약대장 기재사항 출력물을 계약대장으로 갈음한다.	제63조 (계약대장의 비치) ① 계약부서장은 계약대장 기재사항을 <u>계약관리시스템</u>에 입력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② 제 1항에 의해 계약대장을 관리할 경우 <u>계약관리시스템</u>의 계약대장 기재사항 출력물을 계약대장으로 갈음한다.
부 칙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	

구매규격 사전공개 운영업무지침

2016. 7.

계 약 실

제1조(목적)

본 지침은 「계약규정」 제26조의2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

구매규격 사전공개 업무처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본 지침에서의 구매규격이란 물품은 물품규격서(사양서), 기술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등이며, 용역은 발주내역서, 제안요청서 등을 말한다.

제4조(구매규격 사전공개)

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물품계약 및 용역계약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긴급 수요물자 또는 비밀물자,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
2.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
3.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

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제1호의 비밀물자는 「영업비밀보호관리규정」에 따라 중요보호자료 이상의 영업비밀로 분류된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에 한정한다.

제5조(구매규격 작성 및 사전공개의뢰)

계약요청부서는 발주계획품의 작성 이전에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기술규격서, 구매규격서, 발주내역서, 물품규격서(사양서) 및 제안요청서 등 구매규격을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사전공개를 의뢰하여야 하며, 사전공개에 관한 업무 프로세스는 별표 1 구매규격 사전공개 업무 흐름도에 따른다.

제6조(공개기간 및 방법)

- ① 계약부서는 회사 계약관리시스템 또는 한전전자조달시스템(SRM) 등을 통해 5일간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.
- ② 정보시스템을 기획·구축·운영·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,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위한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”에 따라 나라장터에 공개하여야 하며, 세부사항은 해당지침에 따른다.

제7조(의견제출 및 결과반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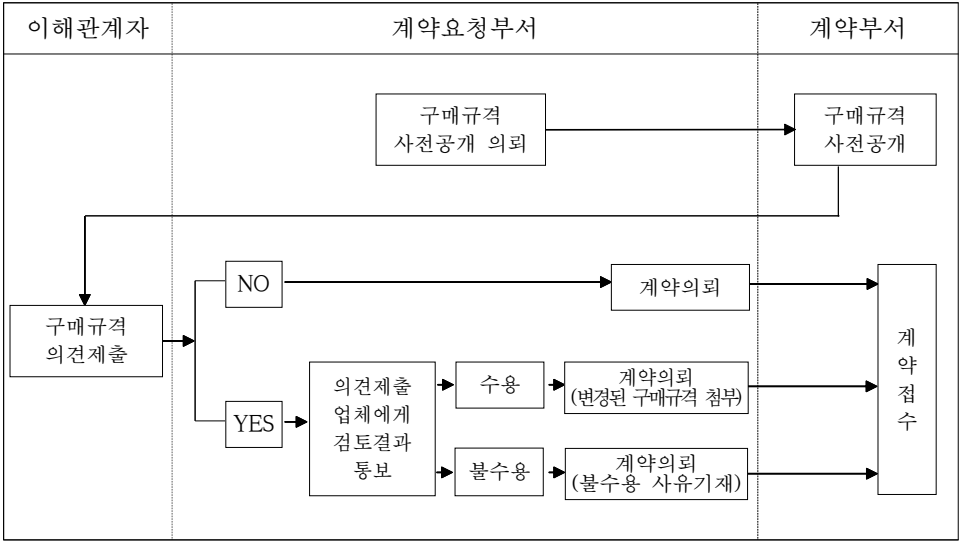
- ① 구매규격 사전공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 이해관계자(입찰참여 희망업체 등)는 공개기간내 의견제출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하며, 공개기간내 제출되지 않았거나, 기간내 제출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1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제출된 내용을 이행할 수 없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
- ② 계약요청부서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요청부서는 제2항에 따라 검토결과 수용가능한 경우에는 변경된 구매규격으로 계약의뢰를 하며, 불수용일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명시하여 계약의뢰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- 1. 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지침은 공포일 이후 신규계약 의뢰건부터 적용한다.

별표 1(신설)

구매규격 사전공개 업무 흐름도



의견제출서				
건명				
수신				
제출자	회사명(성명)		대표자	
	사업자등록번호			
	주소			
	연락처	(Tel: Fax:)		
제출의견				
귀사에서 공개한 구매규격 사전공개 사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 년 월 일 의견제출자 : ○ ○ ○ (인)				